2004년도 농림사업지침
(사료산업)

1. 목 적

□ 국제 사료원료 가격 등락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해 사료제조업체에 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료원료 공급으로 수급안정 도모

□ 사료제조업체에 사료제조시설을 지원하여 양질의 사료공급을 확대하여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 도모

2. 추진방향

□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사료원료의 수급안정

□ 사료제조시설 지원으로 사료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

3. 관계법령

사료관리법 제3조(사료시책의 수립 · 시행 및 재정지원)

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 · 가격안정 · 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사료자원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지원을 융자할 수 있음

4.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개요

1) 사료원료구매자금

□ **지원배경**

환율 및 국제 사료원료가격의 등락에 대비, 원활한 사료원료 공급과 배합사료 가격 안 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

□ **지원대상자**

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 등록업체

□ **지원조건**

- 자금을 지원하는 자는 동 자금을 사료 원료구매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.
- 지원규모 : 29,638 백만원
- 지원금리 : 연 5.5%(융자 100.0%)
- 지원조건 : 1년 거치 일시상환

2) 사료제조시설

□ **지원배경**

사료제조시설설비 지원을 통한 섬유질사료 확대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사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국내 옥수수 등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

□ **지원대상자**

농 · 축협조합, 영농조합법인, 농가등

□ **지원조건**

- 사료제조시설에 필요한 시설, 기계 · 기구, 장비구입비
- 지원규모 : 1,575 백만원(개소당430백만원)
- 지원금리 : 연 5.0%(융자 70.0%)
- 지원조건 : 3년 거치 7년 상환

나. 사업주관 기관

□ **사료원료 구매자금지원**

농림부(축산물위생과), (주)농협사료, 한국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

□ **사료제조시설 설치지원**

농림부(축산물위생과), 시 · 도지사(축산 · 농정과), 시 · 군 · 자치구(축산 · 산업과)